최신 시행 법령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27.] [대통령령 제32926호, 2022. 9. 27., 일부개정]

【주요내용】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을 하는 폐기물 수출업자·수입업자의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입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 수출입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포괄수출계획서 또는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전체 기간의 폐기물에 대하여 보증금 예탁 또는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수출입예정월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후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5호의2, 제3조제8항제3호 신설, 제9조제1항제4호의2, 제9조제7항제3호 신설,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7조의2제2항제11호, 제17조의2제7항제1호다목 신설, 제17조의2제7항제2호다목 신설).**

*포괄수출: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

**포괄수입: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4호, 2022. 9. 22., 일부개정]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거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국가안전유지를 위한 투자심사 관련 서류를 추가함**(별표 1 제4호 신설).**

최신 시행 법령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16.] [대통령령 제32542호, 2022. 3. 15., 일부개정]

【주요내용】

(1)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산정기간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 횟수'로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별표 2).**

(2) '농수산물 수입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별표 2).**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15.]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주요내용】

(1)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에 따를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혁신적인 물품·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적(限時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함 **(제47조의2 신설).**

(2)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제51조제2항 신설).**

최신 시행 법령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62호, 2022. 6. 10.,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사유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확대하고, "특정지역"에서의 발생이라는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제61조제1항).**

(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1항제21호 신설).**